

사 료 관 리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농 립 축 산 식 품 부
(축산환경자원과)

1. 개정이유

사료의 안전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사료관리법이 일부개정(‘23.12.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해사료의 회수 또는 폐기를 명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는 규정 신설(제5조 신설)
- 나. 위해사료의 공표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는 규정 신설
(제8조제4호 신설)
- 다.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기준을 상향(별표 1 개정)
- 라. 제조업 승계 미신고 시 과태료 규정 신설(별표 2 개정)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 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사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료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위해사료 등의 공표)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료의 회수 또는 폐기 조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1. “「사료관리법」 위반 사실의 공표” 또는 “위해사료 등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사료의 종류 및 제품명
3. 해당 사료의 제조(수입)연월일 및 유통기간(또는 유통기한)
4.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및 조치 사항
5. 영업자의 정보(영업의 종류, 영업소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6. 그 밖에 위해 예방을 위하여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제8조(중전의 제7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24조의2에 따른 위해사료 등의 공표

별표 1 제1호라목 중 “50만원”을 “15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과징금 금 액	1일 과징금 금액: 생산 능력(수입 량) 1톤당 1,500원	1일 과징금 금액: 생산능 력(수입량) 1 톤당 15,000 원. 다만, 곡 물류·곡물 부산물류· 박류(粕類: 식물성 원료 에서 원하는 물질을 잔 나머지)·섬 유질류·면 실·인산염 류 및 칼슘염 류의 경우에 는 1톤당 1,5 00원	1일 과징금 금액: 생산능 력(수입량) 1 톤당 30,000 원. 다만, 규 산염제 및 요 소제·완충 제의 경우에 는 1톤당 1,5 00원	1일 과징금 금액: 생산능 력(수입량) 1 톤당 7,500원. 다만, 곡물류 ·곡물부산 물류·박류 ·섬유질류 ·면실·인 산염류 및 칼 슘염류의 경 우에는 1톤 당 750원	1일 과징금 금액: 생산능 력(수입량) 1 톤당 15,000 원. 다만, 규 산염제 및 요 소제·완충 제의 경우에 는 1톤당 750 원	1일 과징금 금액: 생산능 력(수입량) 1 톤당 15,000 원. 다만, 규 산염제 및 요 소제·완충 제의 경우에 는 1톤당 750 원
------------	---	--	--	---	--	--

별표 2 제2호나목(중전의 가목) 근거법령란 중 “법 제36조제1항제1호”를 “법 제36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도지사 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제1 항제1호	500만원
---	------------------	-------

별표 2 제2호다목(중전의 나목) 근거법령란 중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2”를 “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중전의 다목) 근거법령란 중 “법 제36조제1항제2호”를 “법 제36조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호 바목(중전의 마목) 근거법령란 중 “법 제36조제1항제4호”를 “법 제36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료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5호	500만원
--	--------------	-------

부 칙

이 영은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5조(위해사료 등의 공표) <신 설>	제5조(위해사료 등의 공표) 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료의 회수 또는 폐기 조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1. “「사료관리법」 위반 사실의 공표” 또는 “위해사료 등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사료의 종류 및 제품명
	3. 해당 사료의 제조(수입)연월일 및 유통기간(또는 유통기한)
	4.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및 조치 사항
	5. 영업자의 정보(영업의 종류, 영업소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6. 그 밖에 위해 예방을 위하여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제6조 (생 략)	제6조·제7조 (현행 제5조 및 제6조와 같음)
제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제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법 제24조의2에 따른 위해사료 등의

현행	개정안																																																																																
4. ~ 6. (생략) ② (생략) 제8조 (생략) [별표1] 과징금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제조업 생산능력(1일 8시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수입사료의 경우에는 해당 수입사료와 같은 날 같은 선박 등으로 수입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다. 같은 날 제조한 같은 사료가 지역별 검사일시의 차이로 같은 위반 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최초로 적발된 것에만 과징금을 부과한다. 라. 과징금 하한은 50만원으로 하고, 그 상한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table><tr><th rowspan="3">구분</th><th colspan="3">영업의 전부 정지</th><th colspan="3">영업의 일부 정지</th></tr><tr><th>배합사료</th><th>단미사료</th><th>보조사료</th><th>배합사료</th><th>단미사료</th><th>보조사료</th></tr><tr><th>1일 과</th><th>1일 과</th><th>1일 과</th><th>1일 과</th><th>1일 과</th><th>1일 과</th></tr><tr><td>금</td><td>징금</td><td>징금</td><td>징금</td><td>징금</td><td>징금</td><td>징금</td></tr><tr><td>금액</td><td>금액:</td><td>금액:</td><td>금액:</td><td>금액:</td><td>액: 생</td><td>액: 생</td></tr><tr><td>액</td><td>생산능력(수</td><td>생산능력(수</td><td>생산능력(수</td><td>생산능력(수</td><td>산능력(수입</td><td>산능력(수입</td></tr></table>	구분	영업의 전부 정지			영업의 일부 정지			배합사료	단미사료	보조사료	배합사료	단미사료	보조사료	1일 과	1일 과	1일 과	1일 과	1일 과	1일 과	금	징금	징금	징금	징금	징금	징금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액: 생	액: 생	액	생산능력(수	생산능력(수	생산능력(수	생산능력(수	산능력(수입	산능력(수입	<u>공표</u> 5. ~ 7.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별표1] 과징금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제조업 생산능력(1일 8시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수입사료의 경우에는 해당 수입사료와 같은 날 같은 선박 등으로 수입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다. 같은 날 제조한 같은 사료가 지역별 검사일시의 차이로 같은 위반 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최초로 적발된 것에만 과징금을 부과한다. 라. 과징금 하한은 150만원으로 하고, 그 상한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table><tr><th rowspan="3">구분</th><th colspan="3">영업의 전부 정지</th><th colspan="3">영업의 일부 정지</th></tr><tr><th>배합사료</th><th>단미사료</th><th>보조사료</th><th>배합사료</th><th>단미사료</th><th>보조사료</th></tr><tr><th>1일 과</th><th>1일 과</th><th>1일 과</th><th>1일 과</th><th>1일 과</th><th>1일 과</th></tr><tr><td>금</td><td>징금</td><td>징금</td><td>징금</td><td>징금</td><td>징금</td><td>징금</td></tr><tr><td>금액</td><td>금액:</td><td>금액:</td><td>금액:</td><td>금액:</td><td>액: 생</td><td>액: 생</td></tr><tr><td>액</td><td>생산능력(수</td><td>생산능력(수</td><td>생산능력(수</td><td>생산능력(수</td><td>산능력(수입</td><td>산능력(수입</td></tr></table>	구분	영업의 전부 정지			영업의 일부 정지			배합사료	단미사료	보조사료	배합사료	단미사료	보조사료	1일 과	1일 과	1일 과	1일 과	1일 과	1일 과	금	징금	징금	징금	징금	징금	징금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액: 생	액: 생	액	생산능력(수	생산능력(수	생산능력(수	생산능력(수	산능력(수입	산능력(수입
구분		영업의 전부 정지			영업의 일부 정지																																																																												
		배합사료	단미사료	보조사료	배합사료	단미사료	보조사료																																																																										
	1일 과	1일 과	1일 과	1일 과	1일 과	1일 과																																																																											
금	징금	징금	징금	징금	징금	징금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액: 생	액: 생																																																																											
액	생산능력(수	생산능력(수	생산능력(수	생산능력(수	산능력(수입	산능력(수입																																																																											
구분	영업의 전부 정지			영업의 일부 정지																																																																													
	배합사료	단미사료	보조사료	배합사료	단미사료	보조사료																																																																											
	1일 과	1일 과	1일 과	1일 과	1일 과	1일 과																																																																											
금	징금	징금	징금	징금	징금	징금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액: 생	액: 생																																																																											
액	생산능력(수	생산능력(수	생산능력(수	생산능력(수	산능력(수입	산능력(수입																																																																											

현행						개정안					
입량) 1톤당 <u>500원</u>	입량) 1 톤당 <u>5</u> <u>000원.</u>	입량) 1 톤당 <u>1</u> <u>0,000</u>	입량) 1톤당 <u>250원</u>	량) 1톤 당 <u>2.5</u> <u>00원.</u>	량) 1톤 당 <u>5,000</u> <u>원. 다</u>	입량) 1톤당 <u>1,500</u> <u>원</u>	입량) 1 톤당 <u>1</u> <u>5,000</u> <u>원. 다</u>	입량) 1 톤당 <u>3</u> <u>0,000</u> <u>원. 다</u>	입량) 1톤당 <u>750원</u>	량) 1톤 당 <u>7.5</u> <u>00원.</u>	량) 1톤 당 <u>15,00</u> <u>0원. 다</u>
	다만, 곡물류 · 곡물 부산물 류·박 류(粕 類: 식 물성 원료에 서 원 하는 물질을 싼 나 머지) · 섬유 질류· 면실· 인산염 류 및 칼슘염 류의 경우에 는 1톤 당 <u>500</u> <u>원</u>	다만, 만, 규산 염제 · 곡물 요소제 · 완충 제의 경 우에는 1톤당 <u>2</u> <u>50원</u>		다만, 만, 규산 염제 및 요소제 · 완충 제의 경 우에는 1톤당 <u>2</u> <u>50원</u>			다만, 곡물류 · 곡물 요소제 · 완충 제의 경 우에는 1톤당 <u>1</u> <u>,500원</u>	다만, 만, 규산 염제 · 완충 제의 경 우에는 1톤당 <u>1</u> <u>,500원</u>		다만, 만, 규산 염제 및 요소제 · 완충 제의 경 우에는 1톤당 <u>1</u> <u>,500원</u>	

현 행			개정안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내용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내용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
<신 설>			가.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500만원
가. 법 제1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제조업자에게 시정을 요청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500만원	나. 법 제1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제조업자에게 시정을 요청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 제2호	500만원
나. 법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2	300만원	다. 법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36조 제1항 제3호	300만원
다. 법 제16조제8항을 위반하여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 제2호	300만원	라. 법 제16조제8항을 위반하여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 제4호	300만원
라.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료검사를 거	법 제36조	500만원	마.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료검사를 거	법 제36조	500만원

현 행			개정안		
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1항 제3호		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1항 제5호	
마.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 제4호	300만원	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 제6호	300만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연 락 처	(044) 201 - 2359, 2360